

12.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 12.31

주요 골자

- 가.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를 시설·설비·기계 등, 차량·선박·항공기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으로 정함(령 제2조).
- 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가 전체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함(령 제17조).
- 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하거나 매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신의 성격을 갖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령 제19조).
- 라. 신용카드업자 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업무고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함(령 제21조 및 별표).

개정이유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1997. 8. 28, 법률 제5374호)됨에 따라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대여의 범위 등) ①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건을 말한다.

1. 시설·설비·기계 및 기구
2. 건설기계·차량·선박 및 항공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얻거나 동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사용할 자동차는 시설대여계약기간 종료 후 당해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시설대여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치성 소비를 조장하거나 국민경제에 긴급히 필요하지 아니한 업종 또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물건은 이를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④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일정기간”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⑥시설대여등의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이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경과한 기간은 이를 공제한다.

제3조(겸영여신업자) ①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7.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신용금고연합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

10.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②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
2. 계약에 의하여 같은 업종의 다수의 도·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제4조(대주주인 출자자) 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라 함은 여신전문금융회사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그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부터 순차적으로 소유주식수를 합한 경우에 그 주주 모두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수가 같은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소유주식수를 동시에 합한다.

제5조(신용불량자)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그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6조(영업개시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개시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경영여신업자는 그 기간 만료전 30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모집제한)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영여신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경영여신업자의 영업장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2. 당해 경영여신업자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3. 경영위탁계약 등에 따라 당해 경영여신업자의 상호·상표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영업하는 사업자

제8조(공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매 분기말 현재 선불카드발행총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9조(공탁의 권리실행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3. 기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제10조(각종 자금의 이용)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여시설이용자”라 한다)가 당해 자금의 용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용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설대여업자는 용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여 용자금액 및 사용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의료용구의 수입)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건인 의료용구를 수입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상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당해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등기·등록상의 특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등기·등록하고자 하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등기·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범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말한다.

제15조(신기술사업자 주식의 소유한도)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16조(업무) 법 제46조제1항에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2. 지급보증업무

제17조(업무취급비율)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100분의 40이상 취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비율의 계산은 여신액의 매 분기말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자금조달방법) ①법 제4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외국환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행하는 차입 및 외화증권의 발행
2. 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의 양도
3. 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사채 또는 어음발행 등의 제한)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사채 또는 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하여서는 아

니된다.

1. 개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2. 공모·창구매출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불특정다수의 법안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②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인수에 의한 사채의 발행
2.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인수·할인 또는 중개를 통한 어음의 발행

제20조(감사인의 지명요구사유) 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법 또는 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법 제53조제2항 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감사인의 지명이 필요하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①법 제57조제1항 또는 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중별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기간은 6월을,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재정경제원장관이 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중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23조(검사의 위탁) 재정경제원장관이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또는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은 검사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경영여신업자에 대하여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신용카드업법시행령
2. 시설대여업법시행령

제3조(가맹점의 모집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영여신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모집한 가맹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업무취급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보는 자로서 199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취급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내여비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국외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전단중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본문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시설대여회사”를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제229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④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나목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⑤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본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⑥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한국종합기술금융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로 한다.

제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또는 신기술 사업금융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금의 기술신용보증

⑦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⑧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⑨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⑪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 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⑫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⑭외국환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2호중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⑮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⑯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시설대여회사”를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⑰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단서 및 제6조 단서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⑱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1항제3호나목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⑲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㉑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㉒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㉓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별표>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법조문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의 금액
1.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를 영위한 때	법 제57조 제1항제1호	6월	1억원
2.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14조·제16조제1항 내지 제4항·제17조·제18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57조 제1항제2호	3월	5천만원
3.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23조제2항·제24조·제25조제1항·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때	법 제57조 제1항제3호	3월	5천만원
4.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제4항·제5항, 제50조 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58조 제1항		1억원
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58조 제1항		5천만원
6. 시설대여업자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58조 제3항제1호		5천만원
7. 할부금융업자가 법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58조 제3항제2호		3천만원
8.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법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58조 제3항제3호		3천만원